第262回國會 (定期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9 號

國會事務處

- 日 時 2006年12月7日(木)
-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場

議事日程

-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國會事務處職制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3. 國會圖書館職制 전부개정규칙안(계속)
- 4.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발의)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위원회 결정협의의 건
- 11.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審査된案件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2
2.	國會事務處職制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2
3.	國會圖書館職制 전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2
4.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2
О	의사일정 상정의 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발의)(김한길 의원 외 141인 발의)4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이혜훈·정희수·정종복·심재엽·권경
	석·최구식·안홍준·윤건영·임해규·김석준·김영덕·이계경 의원 발의) ·············4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강창일·강혜숙·김태년·김재윤·단병
	호・서갑원・안병엽・안영근・양승조・우제창・이상경・이석현・장향숙 의원 발의)4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임종인·권영길·김태년·단병호·박찬석·심상
	정·엄호성·이영순·강창일·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4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4
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위원회 결정협의의 건6
11.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
О	

(11시22분 개의)

○**위원장 김한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됐습니다.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이재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 2. **國會事務處職制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계속)
- 3. **國會圖書館職制 전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계속)
- **4.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 의)(계속)

(11시24분)

○위원장 김한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항 국회사무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국회도 서관직제 전부개정규칙안, 제4항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최용규 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최용규 법안심사소위원장 최용규 위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국회직제개정안 3건, 국회입법조사처 신설 관계법 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국회입법조사처(지원처) 법안 4건,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10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운영기본법안 등 총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강성종 위원, 정성호 위원, 김희정 위원, 주호영 위원, 김효석 위원과 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과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 부처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6년 11월 28일과 12월 6일, 12월 7일,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6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 주특별자치도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도 모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 특별회계에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을 신설하였습니 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의 세출항목 중 자치

경찰제 실시와 관련한 "이체인력의 인건비 상당액"을 "이체인력의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일부"로 수정하고, 자치특별자치도 계정 이관사업 중 본래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이 아닌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이관사업에 대한 균형발전위원회의 협의를 생략하는 조항을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교통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지역개발계정의 세입으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교통세의 기한연장 등을 내용으로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전제로 하여조건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직제개정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 직제개정안에 대하여는, 의원입법의 급증 등 의정활동의 활성화에따라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한 부서의 실무인력위주로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직제개정안에 반영된 77인보다 15인이 감원된 62인을 증원하기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제실의 경우 직제개정안에서 14인을 증원하고 있으나 5급 1인, 6급 2인 등 3인을 감원하고,

둘째, 위원회의 경우 고위직 증설 억제 방침에따라 5개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을 전문위원으로전환하려는 직제개정안을 채택하지 않았고, 특별위원회 소관업무 증가를 감안하여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인을 추가로 증원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급 1인을 감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원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1인은 부장판사를 파견받아 개방형 직위로 운용하고 국회사무처 전문위원급 1인을 법원에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속기인력의 경우 직제 개정안대로 9인을 증원하되 속기사 7급 1인을 감원하여 속기담당 5 급 1인을 증원하였고,

넷째, 국제국의 경우 직제개정안에서 14인을 증원하고 있으나 두바이에 입법관을 신설하는 것 은 시기상조로 보아 입법관 1인과 7급 2인 등 3 인을 감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장실 별정 4급 비서관 1인, 총장실 별정 3급 비서관 1인을 각각 감원하고, 기획조정 실 공보관실 연수국 총무과 등의 7급 1인씩을 각 각 감원하기로 하였으나, 의장실 별정 4급 비서 관 1인에 대해서는 재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 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 하여 기능직 10급 9인을 감원하여 기능 6급 2인, 7급 2인, 9급 5인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일곱째, 겸임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 기 위해서 정기국회 3개월 동안 인턴 1인을 추가 로 지원하기로 했고 의원실 여성보좌관의 출산휴 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기로 하였 습니다.

국회도서관 직제개정안에 대하여는, 당초 개정 안에서 29인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5급 1인, 7 급 1인, 8급 2인, 9급 또는 계약직 2인 등 6인을 감원하여 총 23인을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개정안에 대하여는, 먼저 8인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법안비용추계팀 2인, 세 수추계팀 1인, 운전원 1인 등 4인을 감원하여 총 4인을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팀장 및 분석관 24인의 직급을 상향조정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팀장 3인, 분석관 4 인 등 총 7인에 대하여만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 니다.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 신설 관계 법안인 국회 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국회입법조사처(지원 처)법안 4건,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입법조사 처를 신설하는 방안은 국회 전체의 새로운 업무 영역 조정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교섭단체 간에 정치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소위 원회에 계류시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최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안은 소위원회에 계류시켜 계속 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길**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위 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정정할 게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한길** 예, 정성호 위원님······

○정성호 위원 어제 국회예산정책처 관련 복수 직 확대 안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제가 소위 에서 보고를 좀 착오로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팀장급 3명은 복수직으로 하고 분석관 7명을 더해서 10명으로 한다고 제가 보고를 했는데, 사 실 이것은 그 전 법안심사소위 비공개회의에서…… 전체 공개회의이지만 따로 정회된 상태에서 소위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 갖고 합의한 사항이 복수 직 팀장 3명, 그다음 복수직 분석관 4명, 이렇게 해서 7명만 복수직으로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제 가 법안심사소위에 보고를 하면서 이것을 착오로 잘못 보고해 갖고 속기록에 분석관 7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보고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지금 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 신 부분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의 보고 내용 중에 바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 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되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를 전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사무처직제 일부개정규칙 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 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회도서관직제 전부개정규칙 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 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개정 규칙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 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34분)

○위원장 김한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제9 항은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므로 국회법 제93조 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묻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 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인사청문 절차를 간소 화하는 내용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방 개혁 기본법안에서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인사청 문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국회법에 그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서 심사의 시급성을 감안해 교섭단 체 간사 간에 오늘 상정하여 바로 처리하기로 합 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5항~제9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발의)(김 한길 의원 외 141인 발의)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 의)(김기현·이혜훈·정희수·정종복·심재 엽·권경석·최구식·안홍준·윤건영·임해 규·김석준·김영덕·이계경 의원 발의)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 의)(문병호·강창일·강혜숙·김태년·김재 윤·단병호·서갑원·안병엽·안영근·양승 조·우제창·이상경·이석현·장향숙 의원 발 의)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 의)(임종인 · 권영길 · 김태년 · 단병호 · 박찬 석 · 심상정 · 엄호성 · 이영순 · 강창일 · 최순 영 · 현애자 의원 발의)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35분)

○위원장 김한길 의사일정 제5항~9항 김한길 의원, 김기현 의원, 문병호 의원, 임종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위원회 대 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5항~제9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 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〇**수석전문위원 안병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길 의원, 김기현 의원, 문병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공통적 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동일인일 경우 인사청문회를 한 번만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인사청 문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인사청 문회를 열도록 되어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 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한길 의원 개정안은 상기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별도의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김기현 의원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경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문병호 의원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갈음하자는 것으로 방법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3개안 공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1회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 형식적 절차를 보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임명된 재판관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하여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상기 행위가 시간적으로 동시 내지 연계된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위하여 상기 2회의 인사청 문회 개최를 1회만 개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 여집니다.

다음,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 개정 법률안은 군 주요 직위자인 합동참모의장,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 주요 직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명문화하려는 취지는 국가안보 유지 및 주요 국 방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후보 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 등을 국회에서 검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2006년 11월 30일 국방위원회는 국방개혁

기본법안을 수정의결하면서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을 규정한 원안 대신에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인사청문만을 실시하기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위원회의 수정의결 내용을 반영하 여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규정한 국회법 제65조 의2제2항의 규정에 합동참모의장을 추가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상기 4건의 국회법 개 정안은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한길** 수고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호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주호영 위원** 주호영 위원입니다.

아마 이 법안이 지난번에 있었던 전효숙 후보 자에 대한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청문회 관 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정리하고자 해서 이런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두 번의 인사 청문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굳이 한 사람에 대해 서 두 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 을 테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은 겸임하기는 하지만 자질이나 검증 대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두 번 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 선택 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다만 법조문에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은 두 번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이 지난번에 있었던 전효숙 후보자에 대해서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전제에서 하는 것이라면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제는 그것을 정리해 주자는 의미라면 그것을 충 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온 날 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사청문 회를 해 보면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온 다음 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일정을 잡고 그다음 에 청문 날짜를 잡고 하는데 적어도 청문회를 하 고 난 다음에 하루이틀 여유를 두고 인사청문경 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인신청기 간이 1주일인가 미리 신청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증인 신청할 기간이 20일 내에서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루 내지 이틀 하 는 인사청문회 중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다시 확인하고 조사해서 재확인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 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드러난 문제를 하루이틀의 여유를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서 충실한 청문회가 되도록 하려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도달한 날 20일 안에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된다는 것으 로는 불충분하고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면 이 법안은 통과하되 우리가 같이 국회가 형식적인 청문회를 거칠 수밖에 없 는 20일의 청문기간을 최소한 25일 내지는 30일 로 늘려야 하는 문제도 이 기회에 같이 시간이 된다면 논의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다른 의견 계십니까?

지금 아마 주호영 위원님 말씀은 인사청문회 기한을 며칠 더 늘리는 게 현실적이냐 현실적이 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호영 위원 예.

○**위원장 김한길**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최용규 위원 주호영 위원님 말씀의 기본취지 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이 법안을 다시 다루기에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개정 논의를 하도 록 하고 이 법안은 세 분의 의원들이 입법 미비 부분을 지적해서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지금 주호영 위원님이 지적하 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더 논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주호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한길**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소위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제8항 김한길·김기현·문병 호·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양교섭단체 간사가 협의해서 서면동의한 제9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 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위원회 결정 협의의 건

(11시42분)

○위원장 김한길 의사일정 제10항 변호사법 일 부개정법률안 심사위원회 결정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변호사의 수입에 관한 장부에 수임 액 등을 기재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 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인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이 개정안의 심사위원회를 법사위원회로 할지 또는 다른 상임위원회로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 온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한 결과 이 안건의 심사위원회를 법사위원회로 결정 해서 회부토록 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위원회를 교섭 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법제사법위원회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4분)

○위원장 김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 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실시된 우리 위원회의 2006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소관기관에 시정 및 처리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국정감사 시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사 간의 검토를 거치고, 아울러 위원님들 실에 사전에 송부해서 보내주신 의견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김희정 위원 예, 이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그러면 김희정 위원님 말씀 듣 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한나라당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 희정입니다.

몇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에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던 부분은 오히려 잘 반영이 됐으나 구두로 지적했던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포함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서구입비 부적절한 예산 사용 시정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예 항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 주셨 으면 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통령비서실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표현이 '퇴직자 합동근무의 적법한 운용'이라고 시정요구를 한 게 있는데 합동근무라는 원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자칫 이 표현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퇴직자의 급여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을 오히려 적법화하고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문구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자 불법급여지급의 시정'으로 문구를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한길 지금 그 보고서 안은 양 교섭 단체 간사 간에 합의 본 내용인데요, 지금 김희 정 위원께서 두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섭단 체 간사님들 간에……

도서구입비 사용에 보다 신중을 요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두 번째는 뭐였지요?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시정조치에 '퇴직자 합동근무의

적법한 운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김한길 알겠습니다. 합동근무라는 문 항을……

○**김희정 위원** '퇴직자 불법급여 지급의 시정'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길 예, 그렇게 고치도록 양 간사 가 합의를 했습니다.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과 양 간사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길** 그렇게 채택하기로 하고, 더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수정해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국회의원상호경조금 현황보고

(11시47분)

○위원장 김한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원상호경조규약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세비에서 매 월 2만 원씩을 갹출해 의원상호경조금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상호경조규약 제5조에 의하면 국회사 무총장은 매년 정기국회 말에 국회의원상호경조 에 관한 회계·경리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국회의 원상호경조금 현황보고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김 양 수 강성종 김 교 흥 김 충 환 김 한 길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웅 래 박 기 춘 오 제 세 이 군 현 이 병 석 이 재 웅 장 경 수 정성호 주 호 영 최 성 최 순 영 최용규 최 철 국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워	아	병	옥
· · · · · · · · · · · · · · · · · · ·	관	빈	성	림
○국회측 참석자	C.	L.	O	Ц
국회측 점직자 국회사무처				
사 무 총		김	태	랑
사 무 차	장	김	용	구
기 획 조 정 실	장	$\circ]$	병	길
법 제 실	장	김	인	철
관 리 국	장	최	양	규
국 제 국	장	김	성	원
총 무 과	장	조	용	복
국회도서관				
도 서 관	장	배	용	수
입법전자정보실	장	박	영	희
기 획 관 리	관	문	병	철
기획감사담당	관	김	광	진
국회예산정책처				
예 산 정 책 처	장	배	철	호
기 획 관 리	관	주	재	연
기획협력팀	장	홍	진	성
○정부측 참석자				
기획예산처				
장	관	장	병	완
차	관	정	해	방
재 정 전 략	실			

【보고사항】

실

○위원 사임 및 보임

균형발전재정기획관

공공혁신본부장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주승용	최철국	열린우리당	2006. 11. 29

장

ò

걸

화

창

성

국

0

류

배

○의안 회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1 엄호성·정희수·김석준·안명 옥·진수희·차명진·서병수·안홍준·정병 국·이계진·배일도 의원 발의)

11월 22일 회부됨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2 최순영·강기갑·권영길·노회 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임종인·천영 세·현애자 의원 발의) 11월 23일 회부됨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성종 의원 대표발의)

(2006. 12. 6 강성종·고흥길·권오을·김재경·최병국·정갑윤·배일도·박종근·곽성문·홍창선·이근식·홍미영·강기정·김동철·김송자·김용갑·강혜숙·정화원·송영길·유기준·이계경·정종복·윤두환·김태환·이계진·정문헌·변재일·이성권·김정훈·한선교·고경화·박상돈·정희수·이원복·서상기·박기춘·우제창·안명옥·최구식·최철국·오영식·주승용·이은영·노영민·우원식·이시종·장복심·김희선·강길부·채수찬·문희·강창일·정병국·정봉주·최규성·문석호·한병도·조경태·배기선·김선미·서갑원·이인영·최규식·최경환의원 발의)

12월 6일 회부됨

투명사회협약 실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6. 11. 24. 우원식·강기갑·강기정·강재섭·강혜숙·권경석·김근태·김동철·김선미·김성곤·김성조·김애실·김영춘·김우남·김태년·김태환·김형주·김희선·문병호·문학진·민병두·박명광·박재완·배일도·서병수·서혜석·안민석·양승조·양형일·우윤근·유기준·유승희·윤건영·윤호중·이경재·이계안·이기우·이낙연·이목희·이상민·이종결·이중순·이은영·이인기·이인영·이종결·이주호·이화영·임종인·임태희·장향숙·정병국·정세균·정청래·조성래·최성·최규성·최재천·한광원·한병도·홍미영의원 발의)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6. 11. 30 김교홍·이윤성·김부겸·이명 규·주성영·이해봉·김석준·이경재·한광 원·이인제·신학용·황우여·박진·김영 숙·유기준·정갑윤·최경환·이종구·최구 식·이상배·김양수·이주영·김광원·유정 복·김애실·권영세·김희정·정두언·이계 경·서상기·박순자·원희룡·이재오·홍준 표·임태희·유필우·송영길·안영근·홍미 영·문병호·박종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4 김동철·배기선·김태홍·조성 래·강기정·정성호·양형일·염동연·지병 문·이종걸·채일병·우윤근·이상경·최재 천·정동채·천정배·박상돈·박재완·김양 수·이은영·장복심·이강두·고흥길·서재 관·최용규·이계경·정두언 의원 발의)

11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